

행정자치부

징계·시정 요구

제 목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지하수 허가 부적정 등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사천시

징계 대상자 사천시 ○○○○과(전 ○○과) 지방○○사무관(전 지방○○주사)
○○

※ 훈계대상자 사천시 ○○○○○(전 ○○과) 지방○○주사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5. 1. 2.부터 2015. 12. 31까지 ○○과(현, ○○○○과)에서 2015. 12. 18. ○○○○○○○○ 내 ○○면 ○○리 ○○○○번지(750톤/일), ○○○○번지(150톤/일)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2015. 12. 30.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 교부 관련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는 2012. 2. 1.부터 2013. 7. 14까지 ○○과(현, ○○○○과)에서 2012. 7. 17. ○○○○○(현, ○○○○○○○○) 내 ○○면 ○○리 산○번지(150톤/일), 산○○-○번지(200톤/일), 산○-○번지(200톤/일)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2012. 7. 24. 준공처리 관련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협의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협의 내용을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천시는 ○○면 ○○리 산○○번지 일원에 155,478㎡면적의 ○○○○○(사업자: ○○○○○(주)) 개발사업 승인을 위하여 2008. 2. 22.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아 2008. 3. 6.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공공공지)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8. 4. 14. 착공하여, 2013. 12. 16. ○○○○○○○ 조성사업을 준공한 후, 2013. 12. 26.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공공공지, 광장, 하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위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8. 2. 22. ○○○○○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 23쪽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의 운영 시 용수공급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생활용수 1일 400톤을 지하수로 개발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승인하였음에도

사천시 ○○과(현, ○○○○과)는 ○○○○○○○ 내 ○○면 ○○리 산○번지에 1일 150톤, 산○○-○번지에 1일 200톤, 산○-○번지에 1일 200톤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2012. 7. 17. 수리하여 2012. 7. 24. 준공처리하였으며, ○○면 ○○리 ○○○○번지에 1일 750톤, ○○리 ○○○○번지에 1일 150톤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를 2015. 12. 18. 접수받아 2015. 12. 29. 현장 확인 후, 2015. 12. 30. 허가증을 교부하여 2016. 1. 14. 준공처리하는 등 ○○○○○○ ○ 내 총 5곳의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하고 준공처리하였다.

2012. 7. 24. 준공 처리된 3개 지하수 관정의 계획취수량이 1일 550톤(150톤+ 200톤+200톤)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하수 1일 취수량 400톤에 150톤을 초과한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하고 준공처리하였으며

2016. 1. 14. 준공 처리된 2개 지하수 관정의 계획취수량인 1일 900톤(750톤+150톤)을 추가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1일 1,050톤을 초과하여 지하수 1일 취수량 1,450톤(2.6배 초과)을 부당하게 허가하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하고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지하수를 22,988톤을 무단 취수 사용하였다.

<지하수 관정 개발 및 준공 현황>

위 치	○○면 ○○리 ○○○○번지	○○면 ○○리 ○○○○번지	○○면 ○○리 산○번지	○○면 ○○리 산○-○번지	○○면 ○○리 산○○-○번지
취수계획량 (톤/일)	750	150	150	200	200
준공일자	2016-01-14	2016-01-14	2012-07-24	2012-07-24	2012-07-24

<환경영향평가협의 초과 취수량 (단위 : 톤)>

년	월	최대취수량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제 취수량	협의초과 취 수 량	지하수 관정(5개소)				
					산○-○번지	산○○-2번지	산○번지	○○○○번지	○○○○번지
계		-	-	22,988	28,868	73,892	29,911	67,301	8,422
2013년	9월	12,000	8,557	-	6,040	2,517	-	-	-
	10월	12,400	9,045	-	6,660	2,385	-	-	-
	11월	12,000	2,281	-	1,652	629	-	-	-
	12월	12,400	-	-	-	-	-	-	-
2014년	1월	12,400	-	-	-	-	-	-	-
	2월	11,200	4	-	4	-	-	-	-
	3월	12,400	-	-	-	-	-	-	-
	4월	12,000	891	-	719	172	-	-	-
	5월	12,400	2,125	-	-	2,125	-	-	-
	6월	12,000	2,580	-	-	2,580	-	-	-
	7월	12,400	2,150	-	-	2,150	-	-	-
	8월	12,400	2,655	-	-	2,655	-	-	-
	9월	12,000	2,323	-	-	2,323	-	-	-
	10월	12,400	1,972	-	-	1,972	-	-	-
	11월	12,000	2,601	-	-	2,601	-	-	-
	12월	12,400	1,472	-	1	1,471	-	-	-

년	월	최대 취수량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제 취수량	협의초과 취 수 량	지하수 관정(5개소)				
					산○-○번지	산○○-2번지	산○번지	○○○번지	○○○○번지
2015년	1월	12,400	2,636	-	8	2,628	-	-	-
	2월	11,200	2,192	-	-	2,192	-	-	-
	3월	12,400	3,522	-	-	3,522	-	-	-
	4월	12,000	2,602	-	-	2,602	-	-	-
	5월	12,400	2,247	-	-	2,247	-	-	-
	6월	12,000	3,918	-	286	3,406	226	-	-
	7월	12,400	3,503	-	650	2,546	307	-	-
	8월	12,400	3,581	-	784	2,797	-	-	-
	9월	12,000	9,210	-	1,571	3,028	4,611	-	-
	10월	12,400	9,598	-	1,596	2,971	5,031	-	-
	11월	12,000	9,176	-	1,651	3,057	4,468	-	-
2016년	12월	12,400	5,167	-	1,445	3,311	411	-	-
	1월	12,400	4,481	-	509	3,012	960	-	-
	2월	11,600	8,713	-	-	-	-	8,713	-
	3월	12,400	10,371	-	-	-	-	10,371	-
	4월	12,000	7,412	-	-	116	323	6,973	-
	5월	12,400	11,494	-	-	-	-	8,855	2,639
	6월	12,000	10,127	-	210	1,180	1,770	4,815	2,152
	7월	12,400	16,102	3,702	1,874	4,190	5,038	3,756	1,244
	8월	12,400	15,888	3,488	1,437	3,429	3,855	7,167	-
9월	12,000	27,798	15,798	1,771	4,078	2,911	16,651	2,387	

사천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지하수 허가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주사 ○○○는 실무책임이, 지방○○사무관 ○○은 실무책임과 담당책임이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취수량 미준수 사업장 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컨트리클럽 사업장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월간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 사업장 내 ○○면 ○○리 산○번지에 위치한 지하수관정에서 2015년 9월, 2015년 10월, 2016년 7월 등 3회에 걸쳐 880톤, ○○면 ○○리 산○-○번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2013년 9월, 2013년 10월 등 2회에 걸쳐 500톤을 허가받은 취수량보다 더 많이 취수하였다.

<지하수 불법 취수 현황>

(단위 : 톤/월)

위 치		○○면 ○○리 ○○○○번지			○○면 ○○리 ○○○○번지			○○면 ○○리 산○○-○번지			○○면 ○○리 산○번지			○○면 ○○리 산○-○번지			
취수계획량 (톤/일)		750			150			200			150			200			
준공일자		2016-01-14			2016-01-14			2012-07-24			2012-07-24			2012-07-24			
위 반 일 자	구분	취수 가능량	취수량	불법 취수량	취수 가능량	취수량	불법 취수량	취수 가능량	취수량	불법 취수량	취수 허가량	취수량	불법 취수량	취수 가능량	취수량	불법 취수량	
	계												880				500
	13.9월													6,000	6,040	40	
	13.10월													6,200	6,660	460	
	15.9										4,500	4,611	111				
	15.10										4,650	5,031	381				
	16.7										4,650	5,038	388				

사천시 ○○○○과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매월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면서 1일 계획취수량(허가)에 해당 월의 일수(30일 또는 31일)를 곱하여 매월 허가된 최대취수량을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정 값과 실제 취수량을

비교해서 실제 취수량이 위 산정 값보다 클 경우에는 허가받은 취수량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여 즉시 해당 지하수 관정의 사용중지와 더불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사천시 ○○○○과는 지하수 사용량만 검침하고 허가조건(지하수 계획취수량) 이행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아 위 사업장의 2개 지하수 관정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1,380톤의 지하수를 초과하여 취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미준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지하수법」에 따른 계획취수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적의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